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희용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452

발의연월일: 2025. 5. 9.

발 의 자:정희용·고동진·김용태

배준영 • 박준태 • 김선교

유용원 • 박충권 • 김형동

임종득 · 정동만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25년 3월 안동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경상북도 헴프 규제자유특구 내 민간기업이 설치한 스마트팜, CCTV 등 시설이 전소 또는 시설 파괴 등 피해를 입었음.

재난 피해를 입은 기업은 복구에 막대한 부담이 있는 실정임에도, 현행법상 재난으로 인한 규제자유특구 내의 시설 피해에 대해서는 복 구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.

이에 각종 재난이 발생하여 규제자유특구 내의 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, 특구사업자의 경영 안정 및 특구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함(안 제84조의 2 신설).

법률 제 호

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장제1절에 제8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4조의2(재난피해 복구지원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인 해 피해를 입은 규제자유특구 내의 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복구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 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u><신 설></u> | 제84조의2(재난피해 복구지원) 국 |
| | <u>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재난 및</u> |
| |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 |
| | 에 따른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 |
| | 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규제 |
| | 자유특구 내의 기업에 대하여 |
| |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 |
| | 차에 따라 복구비용의 전부나 |
| |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|